

정은경 “자가검사키트 한계 잘 알고 써야”

방대본, 자가검사키트 대국민 사용 원칙·방법 안내 호흡기 증상자 보조적 수단 원칙...양성면 PCR검사 양쪽 콧 속 1.5cm까지 면봉 넣어 분비물 채취 방식 검사 1시간 전 코 세척 금지...출혈사고 등 주의해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와도 감염이 의심될 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한 사용 원칙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자가검사키트는 피검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즉석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확진자를 양성 판정할 확률)와 특이도(비확진자를 음성 판정할 확률)가 기존 PCR검사보다 떨어져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2종은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제품이다. 휴마시스 제품은 이날부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은 검체 채취 도구를 양쪽 콧 속 1.5cm까지 집어 넣어 각각 10번 가량 문질러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코 안 분비물이 잘 채취할 수 있도록 검사 1시간 전에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단, 검체 채취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와 달리 일반인이 채취하는 것이어서 출혈 등의 사고가 없도록 안내사항을 검사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무증상자에 대해 검증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허가를 낸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직접비강에 면봉을 집어넣어 분비물을 여러 번 문질러, 양쪽 비강을 다 문질러 검사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비인두라고 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집어넣어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하는 부위에서 채



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는데, 본인(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성(문제)도 있고 비강도말로 대체하다보니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가검사키트마다 주의·안내 사항을 잘 숙지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제한된 검사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려면 안내 사항을 잘 따라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위음성’(가짜음

성)이 있을 수 있기에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PCR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 또는 위양성(가짜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 전·후로는 손씻기와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일 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광주 남부소방,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캠페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현하고, 소통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캠페인'에 나섰다.

선언문 주요내용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우월적 지위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격이나 외모 비하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매월 11일은 한(1)사람을 위한 한(1)가지 실천을 다짐하는 '상호존중의 날'로 운영해 갑질근절 자기진단 및 자체교육으로 배려·소통의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직급이나 직위는 당사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으로 누군가에게 군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소방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직원화합은 서로의 배려임을 새겨,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윤희기자

완도해경, 구조대응역량강화위헌실전형수난대비훈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2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 등과 합동으로 2분기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진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 등과 합동으로 시나리오 없이 인명피해율이 높은 해양사고를 선점하여 출동과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 상황은 원인미상 침수로 인한 익수자 발생을 설정하고 돌발적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였고 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세부 훈련 절차에 따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인원에게 임무를 주었으며, 상황 종료 후에는 대응 세력들과 함께 개선점과 문제점을 찾아 분석·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이민혁기자

무안소방, 선박화재 대비 화재진압훈련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 22일 무안군 망운면 톨머리항에서 정박 중인 선박화재 대비 효율적인 진압대책 마련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무안군청, 해양경찰 및 어업공동체 선주들과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최근 충남 태안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23톤급 통발어선 화재(부상 2, 어선 28척 소실), 진도군 병풍도 남쪽 4km 해상 9.77톤급 연연자망 화재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선박이 FRP로 건조되었고, 유류 및 가스 등 위험물질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인근 선박으로 연소확대 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날 훈련은 ▲ 1단계 결박로프 절단 및 선박 분리이동 ▲ 2단계 방수포 및 수관 이용 화재진압 ▲ 3단계 동력소방펌프로 해수활용 화재진압 단계별로 진행 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곡성경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및 안전속도 5030 홍보

곡성경찰서에서는 곡성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및 안전속도 5030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발대식 이후 녹색어머니회 회원 30명(회장 임기숙)과 경찰관들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도 전개하였다.

김남희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속도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곡성=양해영기자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서 “사고 지점 스쿨존 아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틸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29일 오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

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면서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적용 법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로 진행될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유틸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서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는 시속 9~18km로 파악됐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